

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
(박채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24.

발 의 자 : 박채연, 김지근, 노세영
강혜경, 박경흠, 문희성
신성봉, 권태호, 김기환,
이명녀, 안영호

1. 제정이유

지역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거리예술가의 책무, 지원계획의 수립,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
(안 제4조~안 제6조)

다.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, 협력체계 구축, 업무의 위탁,
시행규칙 (안 제7조~안 제10조)

3. 근거법규

가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
나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

다. 「공연법」 제10조

4. 제정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거리예술”이란, 도로, 광장, 공원 등 주민이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, 연극, 무용, 미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.
2. “거리예술가”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공공장소”란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·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거리예술가의 책무)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, 광장,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(이하“구민”이라 한다)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(이하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4 (제238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
2.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
3.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
4.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
5.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거리예술 활성화 사업)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
2.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
3.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
4.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)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

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·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